

HS上의 食料品 分類體系와 食品業界의 對應方案

金 載 植

〈韓國關稅研究所 研究員·關稅士〉

〈표 1〉 HS 體系 新關稅率의 構造

1. HS의 概要

1960년대 말부터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國名코드, 數量單位, 운송수단, 수송관계 서류 및 商品코드 등과 같은 무역관계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어떤 상품이 국제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7번에 걸쳐 하나의 상품이 달리 記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國際的 統一코드의 연구를 위한 주심체는 유럽경제위원회 산하의 국제무역절차간소화 실무작업반 및 데이터수집과 관리를 위한 專門家團體였다.

1970년초 유럽경제위원회에서 CCC(關稅協力理事會)가 상품분류문제의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국제기구라고 인정되어, 그후 13년간 CCC 주관하에 統一코드의 제정작업이 진행되어 1983년에 國際統一商品分類制度(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Coding System; HCDCS 또는 줄여서 HS라 칭함)의 완성과 동시에 이것의 시행을 위한 國際協約이 성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85년 6월에 개최된 CCC총회

구 분	CCCN	H S	증 감
류	99	97	-2
4 단 위	1,010	1,241	231
6 단 위	—	5,019	5,019
8 (10)단위	7,915	10,888	2,973
세 목 수	2,301	3,447	1,146
평균관세율	19.42	22.03	2.61

에서 國會의 비준을 조건으로 同協約의 가입을 위한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HS體系 新關稅率表 試案을 완성하였다(表 1참조). 또한 HS關稅率表의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HS解說書에 대한 번역작업을 85년말에 마무리하고 86년에는 HS-CCCN-SITC의 3자간 相關表를 개발할 계획으로 작업이 추진중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87년부터 HS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각국간의 關稅讓許 再協商 등이 완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년정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예를들어 전자계산기는 기본세율이 25%이나 지금까지는 美國·日本 등과 양허세율협정을 맺고 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전자계산기 생산이 활발해져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율을 25%로 환원시킬 예정이나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2. HS상 食料品の 分類體系

(1) HS의 商品分類構造

HS는 貿易去來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商品을 21部로 大分類하고, 이를 다시 96類로 中分類한 다음 1,241號로 小分類하고 이어서 5,019個의 小號로 細分類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商品은 그 加工程度에 따라 原資材·未加工物品·半製品·完製品의 順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산동물」은 第1類, 「動物의 가죽」은 第41類, 「가죽제 신발」은 第64類에 분류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類안에서도 加工水準이 높은

것이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예로 第7類에서 「신선 또는 냉장한 채소」 다음에 냉동한 채소, 마지막으로 「건조한 채소」의 順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2) 食料品 分類의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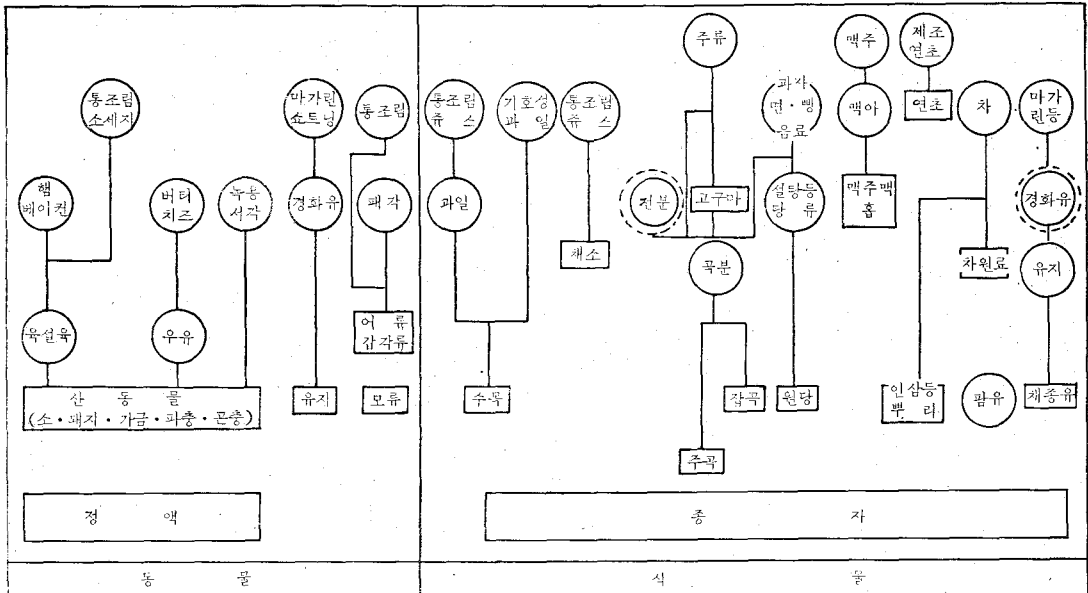
化學的인 특성을 지니는 일부 食品첨가물을 제외하고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S 第1類~第24類에 食料品이 分類되고 있다. 물론 이 범주에는 非食用의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천연의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加工食品이 모두 포괄되고 있다.

HS 第1類에서 第24類에 분류되는 商品의 가공단계를 고려해서 그 有機的인 關係를 도

<표 2> HS類別 食料品分類構造

類別	0	1	2	3	4	5	6	7	8	9	
0		산동물	肉	魚類	낙농품	기타동물성생산물	산수목꽃	채소	과실과류	전신료	커피, 향신료
10	곡물	밀가루, 전분	제유용종자	식물성엑스	기타식물성생산물	동식물성유지	肉, 어류조제품	당류, 설탕과자	실코코아	곡물, 부분의제품	곡조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기타의 조제식품	조음료, 식조	주조제사료	연초						

(예시): 「코코아」는 세로 10, 가로 8의 것이므로 18類에 해당된다.



<그림 1> 食料品の 分類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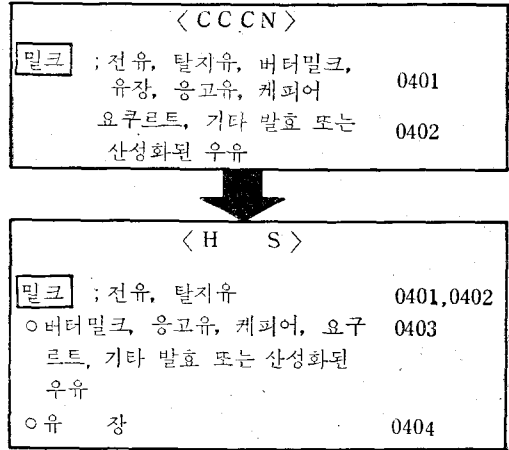
시하면 <그림 1>과 같다.

(3) HS상 主要改編事例

가. 乳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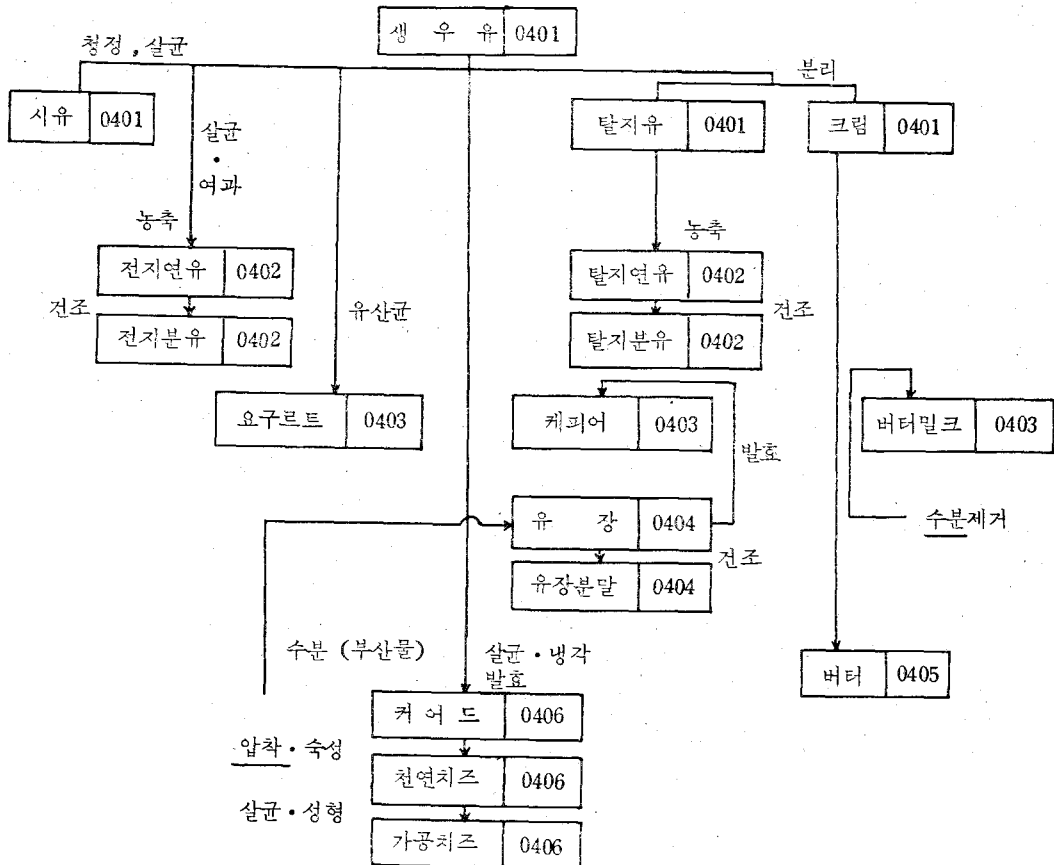
현행 CCCN에서는 「밀크」의 개념이 광의로 정의되어 있으나, HS에서는 全乳(full cream milk) 및 탈지유(skimmed milk)만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품목은 별도 계기함으로써 HS 第 0403號 및 第 0404號가 신설되었다(그림 2 참조).

한편 CCCN 第0402號에서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밀폐한 관에 넣은 밀크와 크림」은 CCCN 第0402號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며, 단순히 살균 또는 펩톤화만 한 것은 밀폐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지 않는 한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그림 2> 밀크의 개념범위축소

다」고 하는 第 4類 註2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HS 第0402 또는 0403號의 表題에



<그림 3> HS 第 4類의 乳製品범위

서 「저장에 적합한 처리」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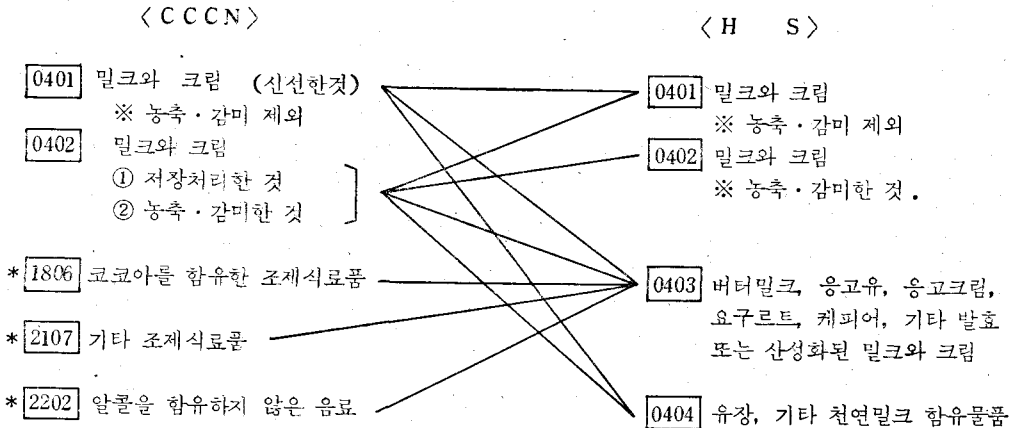
HS 第4類에는 「밀크와 크림」 이외에도 요구르트, 버터, 치즈 등 각종의 乳製品이 분류되는데 이들의 분류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HS에서는 「밀크」의 개념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第0401號 및 第0402號에 분류되던 「밀크와 크림」이 4個의 號로 분할됨은 물론 號의 表題名도 다소 수정되었다. 특히 CCCN 第4類의 乳製品에는 甘味 이외의 타물질이 첨가된 경우 第21類 등에 분류되었으나, HS에서는 甘味 이외에 香 또는 果實(果肉 및 껍포함)이나 코코아가 첨가된 것도 분류되므로, CCCN 第1806, 2107, 2202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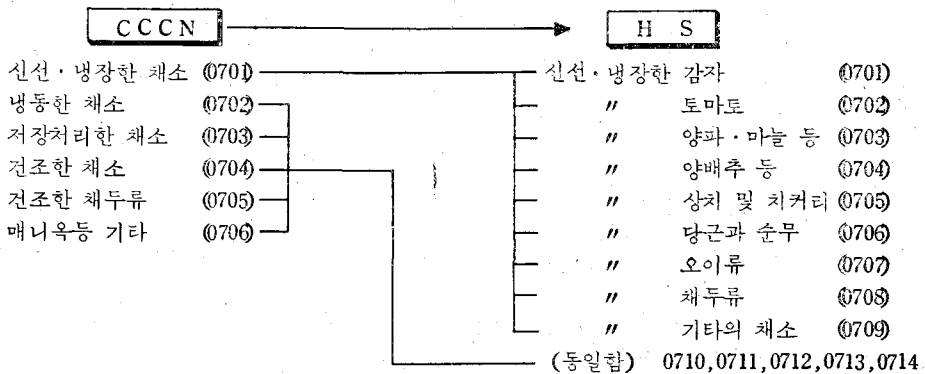
의 일부분목이 HS 第0403號로 이동하였다(그림 <4>참조). 주의해야 할 것은 HS 第0401~0404號의 物品에 調製食品으로서 코코아분말을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10%이하로 함유한 것은 따로 특기 되어있지 않는 한 HS 第1901號에 분류되며, 코코아粉末을 10%이상 함유한 것은 HS 第1806號에 분류된다는 점이다.

나. 채소와 과실류

채소에 관해서 CCCN에서는 신선·냉장·냉동·기타 저장처리·건조한 것 등으로 4單位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HS에서는 「신선, 냉장한 것」을 細分하여 주요한 品目別로 4單位를 부여하고 나머지 냉동 기타 저장처리·건조한



<그림 4> 乳製品 號의 改編



<그림 5> 채소류의 분류

것 등은 종전대로 4單位를 설정하고 있다(그림 5참조).

그리고 CCCN에서는 第0904號에 일괄해서 분류되던 「고추류」가 HS에서는 「진조·분쇄한 것」만 第0904號에 남고 나머지 신선·냉장·냉동·저장처리한 것은 第7類의 채소에 포함되고 있는 점과 CCCN 第1005號의 「옥수수」중에서 「단옥수수」가 HS에서는 第7類에 분류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 하다.

한편, 果實類의 경우에 주요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① 열대성 과실류를 세분하였으며, ② 냉동과실중 加糖한 것을 CCCN에서는 第2203號, 2107號 등에 분류하였으나, HS에서는 냉동과실(第0811號)로 통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 糖類와 調製食品

CCCN에서는 「化學적으로 순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果糖과 麥芽糖」을 第1702號와 第2943號의 두곳에 분류하던 것을 HS에서는 「化學적으로 순수한 과당과 맥아당」일지라도 HS 第1702號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위의 맥아당(Maltose)은 자당(sucrose)의 異性體이고 果糖(Fructose)은 포도당(Glucose)의 異性體, 즉 分子式은 같으나 구조식이 다른 化合物이므로 CCCN 第2943號에서 HS 第1702號로 통합한 것이다. 따라서 HS 第1702號에는 자당, 단풍당(자당), 포도당, 과당 및 맥아당 등이 분류하게 되었다.

食料品분야에서 두드러진 개편중의 하나는 第21類 「각종의 조제식료품」중에 CCCN 第2107號의 「기타의 調製食料品」이 1個의 號로서는 과중하게 많은 상품이 분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號에 분류되는 상품가운데 상당수를 다른대로 옮기는 개정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① 「날알상태로 그대로 조제된 것, 즉 Instant Rice」와 같은 것이 HS 第1904號(...및 날알상의 곡물을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로 옮겨지고 ② 「조제된 마카로니·스파게티」도 HS 第1902號(..., 조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분

류되며, ③ 「全乳·脫脂乳·버터·밀크·응고유·요구르트」 등을 근거로 조제품은 HS 第1901號(...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에 옮겨지고, ④ 땅콩·커피·차」등을 근거로한 조제품도 CCCN 第2107號에서 빠진다.

이외에도, 「치거리」중에서 「치거리 苗根」은 CCCN 第1208號에서 일부가 분리되어 HS 第0601號로 자리바꿈을 하였다.

3. HS導入과 食品業界의 對應

(1) HS의 導入現況

가. 外國

美議會에서는 1974년에 通商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HS제정작업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통상법 第608條 (1) 2號에 ITC가 全權을 가지고 참여토록 규정하였다. 1981년 8월 레이전대통령의 HS도입준비지시에 따라, ITC에서는 1983년 6월에 보고서 및 「HS Conversion Table」을 작성하여 공포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1983년 12월에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HS Conversion Table」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HS-TSUSA Conversion Table」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10단위로 세분되어 있는데 6단위까지는 CCC제정 협약사항이고, 다음 2단위는 關稅分類이며, 나머지 2단위는 統計分類이다. 그리고 TSUSA(현행내국관세율표)와 「HS Conversion Table」의 분류항목수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表 3> HS Conversion Table 분류항목

區分	分類表	TSUSA	H S
稅目數		7,208	8,090 (8단위)
統計品目數		13,700	10,400(10단위)

한편, 日本도 1984년에 HS를 기준으로 한 新關稅率表 試案을 완성하였다. 新關稅率表상의 商品數는 현재의 3,026個에서 6,281個로

늘어나는데, 광공업품이 5,524個이고 農林水產品이 757個 品目이다.

나.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HS의 국내도입을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 처음 시작한 작업은 英文版으로 되어 있는 「HS 6單位分類表」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 번역안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분류표가 되게 하기 위한 8單位細分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번역 및 세분 작업은 82년 초부터 83년 말까지 약 2년에 걸쳐 研究用役事業으로 추진되었다. 이 용역사업은 財務部와 關稅廳이 주관이 되어 수립한 HS 국내도입계획에 의거 貿易協會의 자금지원으로 關稅研究所에서 실무작업을 수행하였다.

財務部에서는 關稅研究所가 제출한 「HS 6單位번역초안」 및 「8단위세분류안」을 토대로 해서 85년 7월에 HS體系 新關稅率表를 성안하여 책자로 발간, 공표하였다. 이 試案은 기존 CCCN체계 관세율 표상의 7,915個品目(8단위 기준)보다 약 3천여품목이 증가한10,888個(10단위기준) 품목이 명시되어 있다. 당초에는 HS를 87년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관세양허협상 등의 이유로 1년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2) 食品業界의 對應

가. 輸出 側面

지금은 CCCN을 쓰고 있지 않은 미주, 캐나다 등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앞으로는 HS 체계로 관세율표상의 상품분류방식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 관세는 무역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수단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輸出하고자 하는 상품의 HS분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래당사자간에 貿易商談을 시작할 때부터 관세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출상대국의 관세율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관세율표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이외에도 덤핑방시관세나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그

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편, 非關稅障壁(NTB)의 한 수단으로 수출상대국에서 「恣意的인 商品分類」에 의해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GAT에서도 「恣意的인 關稅分類」를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恣意的 關稅分類」라 함은 수입국세관에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상품을 관세율표상의 정당한 위치에다 분류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高關稅品目, 또는 輸入制限品目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취급하는 수출상품에 대한 HS분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관을 통해 CCC에 HS협약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77년에 우리나라 주요 특산물의 하나인 人蔘製品에 관한 CCCN분류상 문제점을 CCC에 제기하여 우리나라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正當한 商品分類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한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나. 輸入 側面

어떤 商品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關稅率과 輸入規制내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商品分類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高稅率상품을 低稅率상품으로 오인하고 수입하여 채산상의 차오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HS分類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輸出入商品에 대한 각종 貿易規制를 CCCN體系에 따르고 있는데, 輸入制限品目を 輸入自動承認品目으로 오인하여 수입허가(승인)를 받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국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해 놓고도 通關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단적인 증거로 관세청이 분석한 83년도 CCCN분류정정 통관현황에 따르면 1년 동안의 총 수입신고건수 871,574건중에서 40,492건이 CCCN분류가 잘못되었다.

(36면에 계속)